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3월 23일(월) 12: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과장 안세진(044-203-5750), 임미정사무관(5752)

한-뉴질랜드 간 경제협력을 통한 도약의 기틀 마련

- 양국 통상장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완료 -

▪ **상호보완적인 무역 확대 기대, 농림수산분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 도입**

▪ **청년, 전문가 등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3. 23. (월),**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서명**을 했다.

○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

-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한 FTA 기준으로 약 73.5%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한국-뉴질랜드 FTA의 기대효과】

□ 한국-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했다.

※ 세부 내용은 <첨부 2>를 참고

○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6억불(대뉴 수출 17.3억불, 수입 15.3억불)

-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

○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추진해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 동물질병 위험 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분야 등

-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

○ 또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 기대.

○ 이와 별도로 FTA 체결 계기에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 ※ 양국 장관간 합의서한 교환

☞ **(워킹홀리데이 개선)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천명까지 확대**하고, **고용조건을 완화**하여 우리 워홀러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10개 직종(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하여 뉴질랜드 내 취업 기회 제고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도입) 매년50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 간 교육과 훈련 병행 가능

【한국-뉴질랜드 FTA의 추진 경과】

□ 한국-뉴질랜드 FTA는 **총 5년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했다.

○ 지난 '09. 6. ~'10. 5. 동안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협상 중단.

○ 이후, 주요 계기마다 양국 정상회담부터 실무급 협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 재개를 결정.

- '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우리측은 이익균형의 달성을 위한 창의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

- '13.12월 양국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 '14.2월 협상 재개 이후 '14.10월까지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을 거쳐 '14.11.15일 양국 정상 간 타결 선언.

- 협상 과정에서 몇 차례 고비도 있었으나, 양국 정상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단을 독려하면서 협상 모멘텀을 유지.

* '14. 8.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양국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

【향후 계획】

□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

○ 정부는 지난해 9월 한-호주, 한국-캐나다 FTA를 종합해 「한국-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 축산, 재배업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 간 총 2.1조원을 지원

□ 두 나라는 한국-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참고 첨부

[첨부1] **한-뉴질랜드 FTA 주요 경과**
[첨부2]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첨부3]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첨부4]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첨부5] **한-뉴질랜드 교역·투자 현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 044-203-5750), 임미정 사무관(☎ 044-203-57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한-뉴질랜드 FTA 주요 경과

□ '09.1월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 '09.6월 제1차 협상 개최 후 '10.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제1차('09.6월), 제2차('09.9월), 제3차('09.12월), 제4차('10.5월)

○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

□ '13.7월 한-뉴질랜드 FTA 현황점검회의 개최

□ '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인

□ '13.11월 한-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

□ '13.12월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재개 합의

□ '14.2월 제5차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타결 전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 개최

* **공식협상**: 제5차('14.2월), 제6차('14.3월), 제7차('14.6월), 제8차('14.8월), 제9차('14.10월)
* **비공식 협상**: 회기간 협상 2회 ('14.4월, '14.9월)

○ 제9차 공식협상에서 대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달성

□ '14.11.15일 G20 정상회의(브리즈번) 계기 양국 정상간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 '14.12.22일 양국 수석대표(차관보급)간 한·뉴질랜드 FTA 영문협정문 가서명(initialling)

□ '15.3.23일 뉴질랜드 Key 총리 방한 계기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첨부2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1 상품 양허

□ 뉴질랜드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 **(뉴질랜드측)** 뉴측은 대한 수입의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 3년 내, 97.6% 5년 내, 100% 7년 내 관세철폐

○ **(우리측)** 우리측은 對뉴질랜드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 5년 내, 78.3%를 10년 내,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

□ **(뉴질랜드측 시장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뉴질랜드 내 여타국 경쟁제품과 동등한 여건 마련

*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은 이미 무관세

○ **(타이어, 자동차부품)**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12.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확보

○ **(전자·일반기계)** 세탁기(5%)는 즉시 관세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5%)는 3년 관세철폐

○ **(상용차)**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5%)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 **(철강)** 대뉴 주력수출품인 도금강판(5%)을 포함하여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 **(섬유)**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 견제

* 뉴측의 對中 양허수준보다 對韓 양허수준이 대부분 1~4년 관세철폐 기간 단축

○ **(기타)** 농기계(5%),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5%)는 즉시 관세철폐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유망

□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쌀·천연꿀·과실(사과·배·감 등)·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탈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품 및 혼합의 경우 과거 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2 서비스 · 투자

□ **(시장개방)**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

□ **(협정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투자보호 규범을 규정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도입하고,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

3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기준)** 양국 간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원산지규정에 합의

○ **(농수산물)** 다수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민감성을 보호

○ **(승용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계 편의 제고

○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일부는 염색·날염공정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인정)

□ **(개성공단)** 한·미, 한·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4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 별도로 쇠고기 8개 세번(신선/냉장/냉동)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도입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최소부과원칙*' 도입과 마진 산정시 '제로잉금지원칙' 적용 관행 확인,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 최소부과원칙 :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5 정부 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BOT 포함)을 개방*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

* 양국 모두 상품, 서비스는 13만 SDR(약 2.1억원) 이상, 건설시장은 500만 SDR(약 82억원) 이상으로 규정

**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미발효)

○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포함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6 농림수산 협력

□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약속(비용은 공동 부담)

○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제공

○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임업협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내 연구·훈련 추진(매년 최대 14명)

○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임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매년 최대 6명)

○ **(기타 협력)** 수의역학 공동 워크샵 개최, 기타 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 내 협력 증진 및 투자기회 창출 노력

7 시청각 공동제작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 동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시청각 분야의 對뉴질랜드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

8 인력 이동 ※ 별도 서한으로 합의

□ 현재 운영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개선,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 쿼터(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3천명으로 확대(현재 1,800명)하고, 연수·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

※ 워킹홀리데이란? ☞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연수·교육기간) 3개월→6개월 , (고용제한) 동일 직장에서 최대 3개월→정규직만 금지

○ **(일시고용입국)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내 취업비자를 발급

- **뉴질랜드 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있으며, 양국이 합의한 **직종별 자격요건**(학력, 경력 등)을 충족할 경우, 기본적인 비자 요건(건강, 신원요건 등) 충족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

※ 일시고용입국이란? ☞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 과학자, 식품 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란? ☞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

첨부3 한-뉴질랜드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양허단계	우리 양허안				뉴질랜드 양허안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092	**76.5%**	568,606	**48.3%**	6,220	**85.7%**	850,163	**92.0%**
무관세	1,932	16.3%	459,555	39.1%	4,207	58.0%	698,395	75.6%
유관세	7,160	60.3%	109,051	9.3%	2,013	27.7%	151,768	16.4%
3년철폐	960	8.1%	141,362	12.0%	488	6.7%	41,138	4.5%
5년철폐	394	3.3%	17,222	1.5%	275	3.8%	10,685	1.2%
6년철폐	1	0.0%	53,982	4.6%	–	–	–	–
7년철폐	348	2.9%	113,407	9.6%	273	3.8%	22,106	2.4%
7년 이내	10,795	90.9%	894,579	76.0%	7,256	**100.0%**	924,092	**100.0%**
10년철폐	364	3.1%	26,297	2.2%				
10년 이내	11,159	**93.9%**	920,876	**78.3%**				
12년철폐	72	0.6%	36,351	3.1%				
13년철폐	2	0.0%	18,780	1.6%				
15년철폐	356	3.0%	158,014	13.4%				
15년 이내	11,589	**97.5%**	1,134,020	**96.4%**				
15년 초과	66	0.6%	1,264	0.1%				
계절관세/세번분리	3	0.0%	21,442	1.8%				
관세부분감축	12	0.1%	628	0.1%				
현행관세(TRQ)	12	**0.1%**	17,043	**1.4%**				
양허제외	199	**1.7%**	2,039	**0.2%**				
총계(기타 제외)	**11,881**	**100.0%**	**1,176,437**	**100%**	**7,256**	**100.0%**	**924,092**	**100.0%**
기타*	–	–	–	–	32	0.4%	3,062	0.3%
총합계	11,881	100.0%	1,176,437	100%	7,288	100%	927,154	100%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

첨부4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양허단계	뉴질랜드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원목, 펄프, 나프타, 양모,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1,932	**즉시철폐 (무관세)**	4,207	승용차, 칼라TV, 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및등유
알루미늄괴, 양가죽, 단판,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의약품, 치약, 양가죽, 경유, 액정디바이스, 양탄자, 식염, 천일염	7,160	**즉시철폐 (유관세)**	2,013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면류, 알루미늄조가공품, 빵, 커피류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괴, 버터, 기초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혼합(통조림 등), 의류(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960	**3년 철폐**	488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부품(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타플라스틱제품, 철강선/철강관, 모사, 냉연강판,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밀크알부민, 코코아조제품, 소시지, 토마토페이스트, 초코렛, 완두, 변환기, 밸브,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조개, 오징어	394	**5년 철폐**	275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기타신발
키위	1	**6년 철폐**	–	–
라디에타소나무, 카세인산염, 밸브, 맥주, 딸기, 과일쥬스, 커피, 물, 공기조절기,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자라, 어류(민어, 다랑어, 대구, 돔)	347	**7년 철폐**	273	자동차부품(방열기), 변압기,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섬유판, 합판
치즈(기타/체다 치즈)	1	**7년 철폐 (TRQ)**	–	–
면양, 유당, 홍어, 애버카도우, 전갱이, 뱀장어, 보드카, 사슴고기, 아귀, 위스키	362	**10년 철폐**	–	–
버터	2	**10년 철폐 (TRQ)**	–	–
섬유판, 합판, 어류(명태, 가자미, 황새치, 참치, 대구, 갈치, 꽃게)	71	**12년 철폐**	–	–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1	**12년 철폐 (TRQ)**	–	–
냉동크림	1	**13년 철폐**	–	–
조제분유	1	**13년 철폐 (TRQ)**	–	–
쇠고기, 식용설육(소), 동물의 위, 장(소의 것), 요구르트, 녹용(기타), 호박, 필터담배, 마가린, 감자, 오이, 양파(냉동), 완두, 어류(황다랑어, 조기, 고등어, 민어, 대구)	347	**15년 철폐**	–	–
치즈, 조제식료품	9	**15년 철폐 (TRQ)**	–	–
크림, 조제분유, 조제식료품	3	**17년 철폐**	–	–
홍차, 로얄제리, 멜론, 포도, 버섯류, 닭고기(미절단/냉장), 오리고기, 상추, 마늘	57	**18년 철폐**	–	–
밀크와 크림, 합판	6	**20년 철폐**	–	–
호박(신선/냉장)	1	**계절관세**	–	–
녹용(전지)	1	**세번분리**	–	–
감자(기타)	1	**세번분리/계절관세**	–	–
옥수수,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기타곡분, 대두, 사료	12	**10년간 50% 감축**	–	–
탈전지분유, 연유, 혼합(자숙)	12	**현행관세 (TRQ)**	–	–
–	–	**기타***	32	항공기부품, 의류부속품, 건설중장비부품, 시계부품
쌀, 쌀보리, 천연꿀, 인조꿀, 닭고기(냉동), 돼지고기(삼겹살), 유당, 녹각, 단감,고추, 인삼, 마늘(신선,냉장,건조), 사과, 배, 포도, 감귤,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199	**양허제외**	–	–
	11,881	**총합계**	7,288	

* 기타 :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

첨부5 한-뉴질랜드 교역·투자 현황

□ 교 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673 (0.4)	699 (3.9)	825 (18.0)	891 (8.0)	918 (3.1)	1,104 (20.2)	1,465 (32.7)	1,491 (1.7)	1,730 (16.1)
수 입	967 (8.6)	1,171 (21.1)	1,122 (△4.2)	879 (△21.6)	1,176 (33.7)	1,474 (25.4)	1,339 (△9.2)	1,395 (4.2)	1,526 (9.4)
무역수지	△294	△472	△297	12	△258	△370	126	95	204
총교역액	1,640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3,256

※ '14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0위 교역파트너 (수출 43위, 수입 40위)

□ 투 자

《단위 : 천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 계 (~'14)
뉴질랜드의 대 한 국 투 자	168 (3)	471 (5)	57 (1)	340 (4)	30,718 (7)	359 (4)	458 (5)	495 (3)	932 (6)	71,403 (93)
한 국 의 대뉴질랜드 투 자	21,544 (28)	38,213 (34)	15,801 (27)	13,480 (13)	14,781 (20)	48,835 (22)	23,255 (16)	13,378 (27)	79,029 (19)	495,413 (538)

※ '14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뉴질랜드는 대한국 제49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59위 투자대상

`

□ 한국의 對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 현황(2014년)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휘발유	440	25.4	기타석유화학제품	343	22.5
승용차	276	15.9	원목	342	22.4
경유	274	15.8	낙농품	141	9.3
건설중장비	75	4.3	가축육류	123	8.1
제트유 및 경유	71	4.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90	5.9
합성수지	56	3.2	펄프	75	4.9
동조가공품	44	2.5	과실류	48	3.2
기타어류	32	1.8	단백질류	37	2.4
화물자동차	29	1.7	제재목	33	2.1
타이어	20	1.2	고철	24	1.6
소 계	1,316	76.0	소 계	1,257	82.3
전 체	1,730	100	전 체	1,526	100